

• 소통의 연수 • 통합의 연수 • 안전한 연수



연수구보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제로 115 (우)21967 ☎ 749-7392 / FAX 749-739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1429호 2024. 2. 13.(화)

【공 고】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223호(연수2동 중심상가 간판개선사업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
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 행정예고) 1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224호(청학동 상가 일원 간판개선사업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
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 행정예고) 10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228호(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20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239호(인천광역시 연수구 물놀이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7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250호(공시송달 공고) 44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259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5

회							
람							

**연수2동 중심상가 간판개선사업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 행정예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계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2. 6.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행정예고명 : 연수2동 중심상가 간판개선사업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 행정예고
2. 행정예고 및 목적
 - 간판개선사업으로 무질서한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고,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변경 사실을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같은법 시행령 제28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4. 2.6. ~ 2.26 (20일간)

5. 예고방법 : 구보, 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 시·군·구

6. 의견제출

-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출기한 : 2024. 2.6. ~ 2.26 (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민원접수)
- 제출기관
 - 주소 : 인천광역시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4층 도시계획과
 - 전화 : 032-749-8632, FAX : 032-749-8639

붙임 1. 의견서 1부.

2.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 1부. 끝.

〈붙임 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행정예고명	연수2동 상가 일원 간판개선사업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 행정예고			
의견 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소			
예고내용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행정예고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24년 2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연수2동 상가 일원 간판개선사업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4. 2.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구간을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시범구역 내 광고물 등의 표시 제한·완화에 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품격 있는 광고문화 조성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비시범구역의 지정)

광고물의 표시제한 및 완화할 수 있는 정비시범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위 치 : 연수구 연수2동 ① ~ ④ 구역(면적 범위) 내

- ① : 연수동 606 일원 (용담로 128)
- ② : 연수동 625-6 일원(용담로 148)
- ③ : 연수동 631-6 일원(샘말로 8번길 20)
- ④ : 연수동 600 일원(청능대로113번길 4)

2. 구 역 : 별도 도면 표기 구역【붙임1】

제3조(표시방법의 강화 또는 완화 내용)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은 제4조부터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간판의 총수량)

1개 업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은 벽면이용간판 1개와 돌출간판 1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① 도로의 굵은 지점(도로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도로가 2개 이상 교차하는 모퉁이 지점을 말한다)에 접한 업소거나 도로를 양면에 접한 업소의 경우 간판 1개를 추가(건물 3면이 접하는 3곡각의 경우 각 면에 표시 가능)로 표시할 수 있다.
- ② 의료시설 및 약국에 한해 1면의 면적이 0.36㎡ 이하, 벽면으로부터 돌출 폭은 80cm 이내의 픽토그램형 돌출간판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미용업소의 경우 세로 150cm 이하, 지름 30cm 이하의 규격으로 싸인볼을 추가 설치 가능하다.

제5조(광고물 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 ①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 표시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 등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을 비방하거나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음란 및 저속한 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다.
- ② 광고물의 주표기 내용은 업소명이나 브랜드명 또는 상징 도형으로 제한하고, 보조표기 내용에는 지점명, 전화번호, 인터넷주소, 영업내용 등을 표기할 수 있다.
- ③ 광고물 등의 색채는 원색계열 색상의 과다한 사용을 금지하며, 주변의 다른 광고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광고물 등 재료의 특성을 이용한 색채 또는 간접 조명에 의한 색채효과 등을 고려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④ 유연성 원단(플렉스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고, 에너지 절약형 조명(LED)을 사용한다.
- ⑤ 광고물 등을 지지하는 구조물은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광고물 등은 설치와 변경 또는 제거가 쉽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제거할 때

흔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 및 신고 등)

모든 광고물은 이 규정에서 정한 표시기준에 맞게 허가 또는 신고 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한 5㎡ 이하의 벽면이용간판은 신고를 배제하되 표시계획에 대하여 사전협의 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벽면이용간판의 표시방법)

벽면이용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1층에 설치하는 간판은 판 형태의 입체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크기는 당해 폭의 이내, 세로크기는 1.0m 이내, 채널의 크기는 60cm 이내로 한다.
- ② 2층 이상에 설치하는 간판은 바 형태의 입체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크기는 당해 점포 폭의 80%이내, 세로크기 30cm이내, 채널의 크기는 아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크기 이내로 한다.

(건물 2층 이상에 설치하는 간판 채널 세로크기 계산식) $55\text{cm} + (\text{해당 층수} - 1) \times 5\text{cm} \text{ 이내}$
--

- ③ 상징도형의 경우에는 주요 표시내용 문자의 120% 이하로 한다.
- ④ 간판의 돌출 폭은 건물벽면으로부터 30cm 이내로 한다.
- ⑤ 아크릴 박스는 가로 40cm 이내, 세로 1m 이내, 벽면으로부터 돌출 폭은 30cm 이내로 설치하고, 설치위치는 간판 양 끝 단으로 하며 하나의 간판에 최대 2개까지 설치 할 수 있다.

제8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돌출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의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간판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3m 이상 이격하고, 간판의 바깥쪽 끝 부분은 벽면 으로부터 80cm 이내로 한다.
- ② 간판의 규격은 1면의 면적 0.36㎡ 이내의 사각형 모양으로 하고, 그 두께를 0.2m

이하로 한다.

- ③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위아래로 일직선이 되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각 표시물의 규격을 통일시켜야 한다.

제9조(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 ① 원칙적으로 지주간판의 설치를 금지하나 건물 면이 다른 건물에 의해 가려져 돌출간판 설치가 무의미한 건물의 경우 연립형 또는 단독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 ② 지주이용간판은 연립형으로 업소 당 표시면적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최상단까지의 높이를 4m 미만으로 하고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연립형 또는 일직선상에 표시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각 표시물의 규격을 통일시켜야 한다.
- ③ 간판의 규격은 1면의 면적이 0.36㎡이하로 한다.

제10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점멸방식의 네온류,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동영상 형식의 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으며, 광원에 커버를 씌워 간접조명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전기배선, 컨버터 등 전기 기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적용의 특례)

건물의 특성 및 간판의 디자인 상 이 고시의 규정을 적용함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령 및 조례 표시방법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

- ① 건물주(소유주) 등은 건축물(상가 등)을 임대할 경우 계약서상에 옥외광고물 고시 구역임을 명시하여 세입자가 정비시범구역 고시 기준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고시지역 내 모든 간판을 설치할 경우 연수구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 후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고시일 시행 이전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관련 조례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 ③(기타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영, 조례에 정한 바에 따른다.

【붙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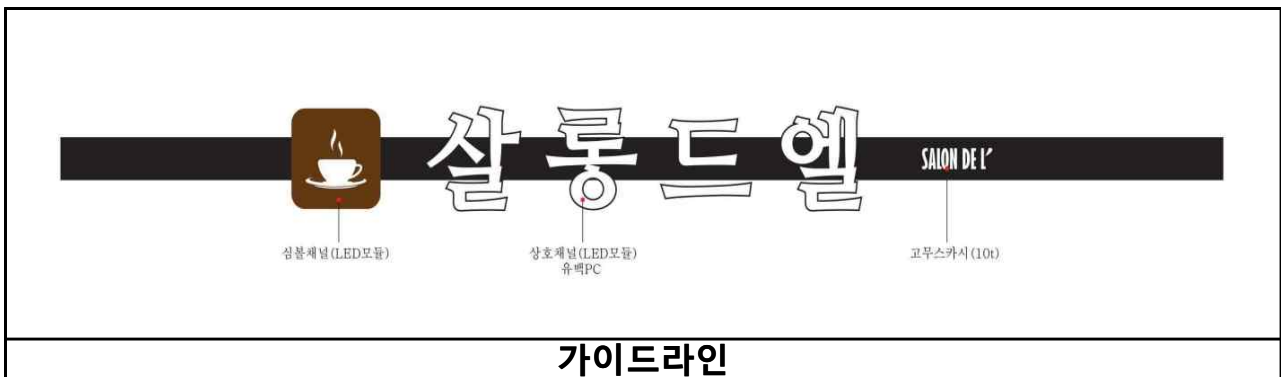
정비구역 지정현황

○ 위치도



【붙임2】

간판 디자인 가이드라인



**청학동 상가 일원 간판개선사업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 행정예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계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2. 6.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행정예고명 : 청학동 상가 일원 간판개선사업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 행정예고
2. 행정예고 및 목적
 - 간판개선사업으로 무질서한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고,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변경 사실을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같은법 시행령 제28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4. 2.6. ~ 2.26 (20일간)

5. 예고방법 : 구보, 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 시·군·구

6. 의견제출

-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출기한 : 2024. 2.6. ~ 2.26 (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민원접수)
- 제출기관
 - 주소 : 인천광역시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4층 도시계획과
 - 전화 : 032-749-8632, FAX : 032-749-8639

붙임 1. 의견서 1부.

2.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 1부. 끝.

〈붙임 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행정예고명	청학동 상가 일원 간판개선사업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 행정예고			
의견 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소			
예고내용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행정예고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24년 2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청학동 상가 일원 간판개선사업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4. 2.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구간을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시범구역 내 광고물 등의 표시 제한·완화에 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품격 있는 광고문화 조성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비시범구역의 지정)

광고물의 표시제한 및 완화할 수 있는 정비시범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1. 위 치(붙임1 참조) : 연수구 청학동 ① ~ ⑮ 구역(면적 범위) 내

- ① : 청학동 475 일원(함박외로 10)
- ② : 청학동 477-1 일원(용담로50번길 28)
- ③ : 청학동 477-4 일원(함박외로4번길 17)
- ④ : 청학동 475-5 일원(함박외로4번길 1)
- ⑤ : 청학동 483 일원(청능대로53번길 24-4)
- ⑥ : 청학동 484-1 일원(용담로76번길 8-1)
- ⑦ : 청학동 484-4 일원(청명로3번길 16)
- ⑧ : 청학동 486-4 일원(청명로3번길 3)

⑨ : 청학동 483-8 일원(청능대로53번길 6)

⑩ : 청학동 491 일원(용담로63번길 26)

⑪ : 청학동 496 일원(청명로 34)

⑫ : 청학동 497-8 일원(청명로 16)

⑬ : 청학동 493-1 일원(청명로31번길 9)

⑭ : 청학동 492-8 일원(청명로17번길 10-3)

⑮ : 청학동 491-8 일원(청명로17번길 30)

1-2. 위 치(붙임2 참조) : 연수구 청학동 ① ~ ⑫ 구역(면적 범위) 내

① : 청학동 524-1 (청학로11번길 33)

② : 청학동 528-9 (청학로 10)

③ : 청학동 527-1 (청학로 4)

④ : 청학동 63-2 (청솔로 11)

2. 구 역 : 별도 도면 표기 구역【붙임1, 붙임2 참조】

제3조(표시방법의 강화 또는 완화 내용)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은 제4조부터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간판의 총수량)

1개 업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은 벽면이용간판 1개와 돌출간판 1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① 도로의 굵은 지점(도로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도로가 2개 이상 교차하는 모퉁이 지점을 말한다)에 접한 업소거나 도로를 양면에 접한 업소의 경우 간판 1개를 추가(건물 3면이 접하는 3곡각의 경우 각 면에 표시 가능)로 표시할 수 있다.
- ② 의료시설 및 약국에 한해 1면의 면적이 0.36㎡ 이하, 벽면으로부터 돌출 폭은 80cm 이내의 픽토그램형 돌출간판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미용업소의 경우 세로 150cm 이하, 지름 30cm 이하의 규격으로 싸인볼을 추가 설치 가능하다.

제5조(광고물 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 ①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 표시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 등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을 비방하거나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음란 및 저속한 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다.
- ② 광고물의 주표기 내용은 업소명이나 브랜드명 또는 상징 도형으로 제한하고, 보조표기 내용에는 지점명, 전화번호, 인터넷주소, 영업내용 등을 표기할 수 있다.
- ③ 광고물 등의 색채는 원색계열 색상의 과다한 사용을 금지하며, 주변의 다른 광고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광고물 등 재료의 특성을 이용한 색채 또는 간접 조명에 의한 색채효과 등을 고려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④ 유연성 원단(플렉스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고, 에너지 절약형 조명(LED)을 사용한다.
- ⑤ 광고물 등을 지지하는 구조물은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광고물 등은 설치와 변경 또는 제거가 쉽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제거할 때 흔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 및 신고 등)

모든 광고물은 이 규정에서 정한 표시기준에 맞게 허가 또는 신고 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한 5㎡ 이하의 벽면이용간판은 신고를 배제하되 표시계획에 대하여 사전협의 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벽면이용간판의 표시방법)

벽면이용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1층에 설치하는 간판은 판 형태의 입체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크기는 당해 폭의 이내, 세로크기는 1.0m 이내, 채널의 크기는 60cm 이내로 한다.
- ② 2층 이상에 설치하는 간판은 바 형태의 입체형로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크기는 당해 점포 폭의 80%이내, 세로크기 30cm이내, 채널의 크기는 아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크기 이내로 한다.

(건물 2층 이상에 설치하는 간판 채널 세로크기 계산식) $55\text{cm} + (\text{해당 층수} - 1) \times 5\text{cm}$ 이내
--

- ③ 상징도형의 경우에는 주요 표시내용 문자의 120% 이하로 한다.
- ④ 간판의 돌출 폭은 건물벽면으로부터 30cm 이내로 한다.
- ⑤ 아크릴 박스는 가로 40cm 이내, 세로 1m 이내, 벽면으로부터 돌출 폭은 30cm 이내로 설치하고, 설치위치는 간판 양 끝 단으로 하며 하나의 간판에 최대 2개까지 설치 할 수 있다.

제8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돌출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의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간판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3m 이상 이격하고, 간판의 바깥쪽 끝 부분은 벽면으로부터 80cm 이내로 한다.
- ② 간판의 규격은 1면의 면적 0.36m^2 이내의 사각형 모양으로 하고, 그 두께를 0.2m 이하로 한다.
- ③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위아래로 일직선이 되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각 표시물의 규격을 통일시켜야 한다.

제9조(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 ① 원칙적으로 지주간판의 설치를 금지하나 건물 면이 다른 건물에 의해 가려져 돌출간판 설치가 무의미한 건물의 경우 연립형 또는 단독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 ② 지주이용간판은 연립형으로 업소 당 표시면적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최상단까지의 높이를 4m 미만으로 하고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연립형 또는 일직선상에 표시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각 표시물의 규격을 통일시켜야 한다.
- ③ 간판의 규격은 1면의 면적이 0.36m^2 이하로 한다.

제10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점멸방식의 네온류,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동영상 형식의 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으며, 광원에 커버를 씌워 간접조명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전기배선, 컨버터 등 전기 기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적용의 특례)

건물의 특성 및 간판의 디자인 상 이 고시의 규정을 적용함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령 및 조례 표시방법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

- ① 건물주(소유주) 등은 건축물(상가 등)을 임대할 경우 계약서상에 옥외광고물 고시 구역임을 명시하여 세입자가 정비시범구역 고시 기준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고시지역 내 모든 간판을 설치할 경우 연수구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 후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고시일 시행 이전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관련 조례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 ③(기타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영, 조례에 정한 바에 따른다.

【붙임1】

정비구역 지정현황(청학동507번지 일원)

○ 위치도



청학동 상가 일원 간판개선사업

【붙임2】

정비구역 지정현황(청학동524번지 일원)

○ 위치도



【붙임3】

간판 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228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제26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6.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133

제출일자 2024. 2. 7.

제 출 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보건소 제증명 발급 및 검사 수수료 징수 기준을 「국민건강보험법」을 근거로 현실화 및 적합성을 확보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여 보건소 수수료 징수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검진자의 검사 비용 징수 기준 명확화 (안 제6조)
-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면제 대상자 추가(안 제9조)
 -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면·면제 대상자 추가
- 관계 법령에 따른 정확한 명칭 사용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등(붙임참조)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행정규제평가 결과 : 대상 아님
 -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2023. 10. 31. ~ 11. 20.) 결과 : 의견 없음
 - 의견수렴 결과 : 의견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 반영

검토결과	해당 조례 개정사항에 따르면 일부 검사항목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적용 비율을 자체 조정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으나 적용비율 조정의 구체적 기준 및 상한 등의 기준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행정기관 및 실무담당자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자의적 재량권 남용의 가능성이 있음.
반영내역	제6조제3항 단서 수정 ○ 원안 ③ 진료가 아닌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검진자의 검사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다만, 일부 검사항목의 검사비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적용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 수정안 ③ 진료가 아닌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검진자의 검사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다만, 일부 검사항목의 검사비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적용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나 그 상한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70을 넘지 못한다.

- 법제심사 결과 : 의견 반영(자구 수정 등)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진료비)”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진료비는”을 “이 조례에서 “진료비”란”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4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동약가기준액표”를 “급여목록표”로, “당해 기관이 실수입가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에서 실제로 구입한 가격으로”로 한다.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급여목록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버린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서 수가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제6조의 제목 “(기타수가)”를 “(그 밖의 수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3조 및 제5조를 제외한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수가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제3조에 따른 진료수가를 적용받지 않는 일반환자의 진료수가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따른 보건소진료수가의 총액을 징수한다.

③ 진료가 아닌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검진자의 검사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다만, 일부 검사항목의 검사비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적용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나 그 상한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70을 넘지 못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일 경우: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을 적용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외 다른 지역 주민일 경우: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70을 적용

제7조제2항 중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액”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별표 1“에 의하여”를 “별표 2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을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소장”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타 법령에 의거”를 “다른 법령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호”로 한다.

제9조제2항제7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진료 및 예방접종.

제9조제2항제7호에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가.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2세환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사람

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는 증서를 소지한 사람

마.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제10조 중 “수수료등”을 “수수료”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추가 징수) 거짓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그 밖의 수가(제6조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수수료(원)	비 고
1. 치면 열구 전색	1회 당	5,000	
2. 불소도포	전체치아	5,000	
3. B형간염 유효 예방접종	1회 (0.5ml, 1.0ml)	약품의 최근 구입 가격	100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2]

제증명 발급수수료 징수 기준(제7조제7항 관련)

구 분	기 준	수수료(원)	비 고
1. 소견서	1통	1,100	
2. 기 발급 증명서 추가발급	1통	300	
3. 1통 초과발급		100	
4. 방사선 영상 CD 사본	1매	3,0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진료비) <u>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 <u>진료비</u> ”란----- -----.
제3조(진료수가) <u>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u>	제3조(진료수가) <u>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u>
제4조(약가) <u>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건강보험 약가기준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동 약가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약품의 비용은 당해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u>	제4조(약가) <u>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급여목록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버린다.</u> -----, <u>급여목록표</u> ----- ----- <u>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에서 실제로 구입한 가격으로</u> ----- -----.
제5조(타 법령에 의한 수가) 「국민건강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 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서 수가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과할 수 없다.

제6조(기타수가) 일반환자의 진료
수가는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
(이하 “보건소” 라 한다) 진료수
가의 총액을 징수한다.

<신 설>

<신 설>

제6조(그 밖의 수가) ① 제3조 및
제5조를 제외한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수가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제3조에 따른 진료수가를 적
용받지 않는 일반환자의 진료수
가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따
른 보건소진료수가의 총액을 징
수한다.

③ 진료가 아닌 건강검진을 목적
으로 하는 일반검진자의 검사비
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
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다만,
일부 검사항목의 검사비용은 건
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적용 비율
을 조정할 수 있으나 그 상한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100분
의 70을 넘지 못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일 경우: 건
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을 적용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외 다른

제7조(증명서발급수수료 등) ①
(생략)

② 추가적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액에 따라 진찰 및 검사 항
목별로 산정하여 징수하고, 건강
보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상
해·자해환자)에는 행위별 진료
수가 전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③ ~ ⑥ (생략)

⑦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
찰, 검사, 방사선진단 등 진료수
가 외의 제증명 발급수수료는 "별표 1"에 의하여 징수한다.

⑧ 보건소에서 행하는 각종 검사
수수료는 "별표 2"에 의하여 징
수한다.

제9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①
보건소장은 관내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보건의료시책상 필요
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의뢰한 경
우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
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

지역 주민일 경우: 건강보험요
양급여비용의 100분의 70을 적
용

제7조(증명서발급수수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

-----.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

별표 2에 따라 -----.

<삭 제>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면
제)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
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
다)-----

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략)

2. 타 법령에 의거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②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와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 6. (생략)

7. 연수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2세환자, 특수
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 장기복
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
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사
람의 진료 및 예방접종.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정하며, B형 간염예방접종은
제외한다.

<신설>

<신설>

-----.

1. (현행과 같음)

2. 다른 법령에-----

② -----
----- 각 호-----

-----.

1. ~ 6. (현행과 같음)

7.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
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진료 및 예방
접종. -----

-----.

가.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신 설>

<신 설>

<신 설>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
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기

인

다.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5·18민
주유공자 및 그 유족, 고엽
제 후유증환자 및 2세환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
족,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
한 증서를 소지한 사람

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
증자 및 기증희망자로서 운
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증명
서에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
망자임을 표시하는 증서를
소지한 사람

마.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삭 제>

<u>증희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u>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u> <u>하는 증명서에 장기기증자 및</u> <u>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는 증서</u> <u>를 제시하는 경우</u> 9. <u>기타</u>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보건의료사업 제10조(납부) 진료비 및 <u>수수료등</u>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제11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u>진료비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u> <u>는 이를 추징 할 수 있다.</u> 제12조(시행규칙) <u>이 조례 시행에</u> <u>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u> <u>정한다.</u>	8. <u>그 밖에</u> ----- ----- 제10조(납부) ----- <u>수수료</u> -- -----. 제11조(추가 징수) 거짓으로 진료 <u>비 및 수수료를 감면 또는 면제</u> <u>받은 경우에는 이를 추가 징수</u> <u>할 수 있다.</u> <삭 제>
---	--

관계법령 발췌사항

지역보건법

[시행 2023. 3. 28.] [법률 제19305호, 2023. 3. 2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044-202-2805

- 제25조(수수료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3. 8. 20.] [법률 제19420호, 2023. 5. 1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044-202-2702, 2708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044-202-2737

-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①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은 공단과 각 요양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본다. <개정 2013. 5. 22.>
-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이 정해지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 ⑤ 공단의 이사장은 제33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⑥ 심사평가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그 요청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 ⑦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시행 2022. 10. 13.] [보건복지부령 제914호, 2022. 10. 1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행위) 044-202-2733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치료재료) 044-202-2734

제8조(요양급여대상의 고시) ① 삭제 <2016. 8. 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을 급여목록표로 정하여 고시하되,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요양급여행위(이하 “행위”라 한다), 약제 및 치료재료(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급되는 약제 및 치료재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분하여 고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기관의 진료에 대하여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1회 방문에 따른 행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31., 2008. 3. 3., 2010. 3. 19., 2012. 8. 31., 2016. 8. 4.>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해당 질병군별로 별표 2 제6호에 따른 비급여대상, 규칙 별표 6 제1호다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항목 및 같은 표 제1호사목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제외한 모든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하나의 포괄적인 행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포괄적인 행위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31., 2005. 10. 11., 2008. 3. 3., 2010. 3. 19., 2012. 8. 31., 2014. 9. 1., 2015. 5. 29., 2015. 6. 30., 2017. 6. 2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요양병원의 입원진료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제2항의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1일당 행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1일당 행위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8., 2008. 3. 3., 2010. 3. 19., 2012. 8. 31., 2015. 6. 30., 2017. 8. 4.>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을 고시함에 있어 행위 또는 하나의 포괄적인 행위의 경우에는 영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이하 “상대가치점수”라 한다)를 함께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07. 12. 28., 2008. 3. 3., 2010. 3. 19., 2012. 8. 31., 2021. 3. 26.>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3. 2.]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1290호, 2020. 3. 2., 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안전관리과), 749-8850

제6조(우대)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이용료, 주차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보여 주어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여 주어야 한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有	無
검 토 사 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2. 규제개혁위, 물가대책위 등 심의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6. 그 밖의 문제점		○
실·과·소·동별 의견수렴 결과			
수 렴 기 간	제 출 의 건	검 토 내 용	
○ 기 간 -2023.10.31.~2023.11.20.	의견 없음		
○ 내 용 - 의견수렴			
입 법 예 고 결 과			
예 고 기 간	제 출 의 건	검 토 내 용	
○ 기 간 -2023.10.31.~ 2023.11.20.	의견 없음		
○ 방 법 - 홈페이지 및 기타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놀이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놀이장 운영 조례」의 일부를 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7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놀이장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조례 제1157호(2019. 9. 18. 최초시행) 의거, 조례 현행화 및 개선
- 물놀이장 운영에 따른 입장의 제한 및 질서유지 사항 정비
- 상위법령 변경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용어 정비

3. 주요내용

- 물놀이장 입장의 제한 및 질서유지 사항 정비(안 제5조)
- 상위법령 변경 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2. 27. (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공원녹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4층 공원녹지과

○ 연락처 : 전화 749-8693 / FAX 749-8689

○ E-mail : lth011006@korea.kr

라.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4. 붙임자료

가. [붙임1] 조례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놀이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놀이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용자”라 함은”을 ““이용자”란”으로, “한다.)”를 “한다)”로, “물놀이장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을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자가”를 “사람으로서”로, “이용자들”을 “이용자”로,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안전사고와 주변 환경 청결을 위하여 안전요원”을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수구 홈페이지와 이용자들이”를 “구 홈페이지와 이용자가”로 한다.

제4조제1항 후단 중 “만6세”를 “6세”로, “함께 동행”을 “동행”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입장의 제한 및 질서유지)”를 “(이용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술에 만취한”을 “음주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2. 물놀이장의 질서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 보조견 제외)

제6조 중 “이용자들”을 “이용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1.“물놀이장”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연수구”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1. -----이란 ----- ----- ----- 말한다.
2.“이용자”라 함은 여름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간 동안 건전한 여가선용 및 피서를 목적으로 물놀이장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2. “이용자”란 ----- ----- ----- 한다)----- -----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
3.“안전관리요원”이라 함은 관련법에 따라 안전관리 자격을 갖춘 자가 물놀이장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한 자를 말한다.	3. -----이란 ----- ----- - <u>사람으로서</u> ----- ----- <u>이용자</u> ----- ----- -- <u>사람을</u> ----.
제3조(물놀이장 관리) ① 구청장	제3조(물놀이장 관리) ① -----

은 물놀이장의 운영기간 내 안전사고와 주변 환경 청결을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수질은 물놀이장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물놀이장 운영 기간 및 이용시간은 연수구 홈페이지와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물놀이장 이용) ① 물놀이장은 누구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만6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동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5조(입장의 제한 및 질서유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물놀이장 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설>

2. (생략)

-----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

② -----
----- 구 홈페이지와 이용자가 -----
-----.

제4조(물놀이장 이용) ① -----

----. ---- 6세 -----
----- 동행-----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이용 제한) ① -----

-----.

<삭제>

2. 물놀이장의 질서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 (현행 제2호와 같음)

3. (생 략) 4. 감염병 질환자 및 술에 만취한 사람 5.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6. (생 략) ②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중 「동물보호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조(보험가입) 구청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현행과 같음) 4. ----- 음주한 ----- 5.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 보조견 제외) 6. (현행과 같음) <삭 제> 제6조(보험가입)----- -----이용자----- ----- ----- -----.
--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250호

공시송달 공고

옥련대진빌라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 「옥련대진빌라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토지등에 대한 재결서 정보를 소유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 기간 내에 재결서 정보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8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사업명: 옥련대진빌라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 옥련대진빌라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3. 공고기간 : 2024. 2. 8. ~ 2024. 2. 29.
4. 재결서 수령장소 : 연수구청 주택과
5. 공시송달 대상자

번호	성명	송달주소(최종 확인지)	비고
1	이*유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달빛로 1*3, 7*9동 2*02호	공시송달 대상
2	이*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2*9-*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주택과(☎032-749-86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8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2. 개정이유

가. 장애인체육 단체 운영 지원을 위한 근거 조항 정비

나. 근거법규 현행화 및 불필요한 용어 정비 등 기존 규정의 미비점 보완·개선

3. 주요내용

가. “장애인체육 단체”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4호)

나. 불필요한 위탁 규정 삭제·정비(안 제3조제2항)

다. 근거법규 현행화(안 제1조)

라. 기타 용어 및 불분명한 문장 등 정비(안 제1조 ~ 제3조)

4.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2. 28.(수)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 체육청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동춘동, 연수구청)
- 연락처 : 전화 749-8462, FAX 749-8459
- E-mail : doncare@korea.kr

라.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5. 참고자료

가. [붙임1] 조례 개정(안)

나.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제13조,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와 「장애인복지법」 제28조, 제29조 및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을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13조, 제18조와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증진 및 체위향상 등 장애인 체육진흥”을 “증진 등 장애인체육 진흥”으로, “지원하는데”를 “지원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이하“구””를 “이하 “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연수구”를 “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자”를 “사람”으로, “친선경기대회를”을 “친선경기대회는”으로, “출전된 자로서”를 “출전한 사람으로서”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소정의”를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일정한”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4. “장애인체육 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장애인체육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를 “장애인체육 단체, 장애인체육 동호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운영”을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국내”를 “국내·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제13조,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와 「장애인복지법」 제28조, 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 증진 및 체위향상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의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13조, 제18조와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 ----- ----- ----- 증진 등 장애인체육진흥----- ----- --- 지원에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생략)	제2조(정의) ----- ----- 뜻은 -----. 1. ----- ----- 따라 ----- ----- 이하 “구” ----- -----. 2. (현행과 같음)

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연수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의거 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 우수선수”란 국내전국대회에서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자(단체경기에서 입상한 경우에 경기에 참가한 각 선수를 말한다) 또는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를 제외한다)에 출전된 자로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6. “장애인체육지도자”란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7. (생략)

3. -----

----- 구-----

--.

4. “장애인체육 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

----- 사람-----

-----친선경기대회는 ---
----- 출전한 사람으로서

사람을 --.

6.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일정한 -----
----- 사람을 --.

7. (현행과 같음)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장애인체육단체,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2. (생략)

3.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여건 마련

4.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 교류

5.·6. (생략)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을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다.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① -----

-----.

1. 장애인체육 단체, 장애인체육 동호회-----

2. (현행과 같음)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운영 -----
--

4. ----- 국내·외 -----

5.·6.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